

자양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

제1조(명칭) 본 협의체는 “자양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(이하 "본 협의체"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협의체는 민·관 협력 복지공동체 구성으로 지역 내 위기가정,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역할) 협의체는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, 자원 발굴 및 연계, 지역보호체계 구축·운영 및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각지대 및 복지자원 발굴을 위한 대민 홍보
2. 지역사회 자원 동원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
(정기후원금 결연, 수강권 제공, 급식지원 식당 연계 등 후원금품 발굴 및 지원)
3. 취약계층 발굴 지원 및 권익보호 활동
(모니터링 및 단순사례관리, 급여관리, 멘토링 등)
4. 생계곤란 등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청취·상담 등

제4조(구성)

-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자원제공 및 발굴·연계가 가능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 실천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,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3항을 준용하여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.
- ③ 주민자치위원장, 통장협의회장, 복지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추천한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 총무 1명을 지정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⑤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권리와 의무) 위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체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하며 회의와 모임에 출석하여 발언과 의결권을 가진다.

제6조(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(동장, 주민자치위원장, 통장협의회장)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② 위원이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7항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제7조(임원의 선출)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.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다음 방법에 의거하여 선출한다.

- 1.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 선출된 1명으로 한다.
- 2.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추천하거나 위원 중 1명을 선출한다.

제8조(임원의 직무) 협의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- 1.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,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,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.
- 2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)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.

- 1. 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- 2. 정기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3. 임시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회의록 작성 및 게시) 협의체는 위원장의 책임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여야 한다.

- 1.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
- 2. 출석위원 명단
- 3. 회의내용 또는 상정안건, 회의결과
- 4.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11조(비밀준수 의무) 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사례관리 대상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에서 가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